하며, 행정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(행정심판법 제27조, 행정소송법 제20조).

※ 문의 : 서울특별시 민생경제과
(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☎2133-5364)

◈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-641호

한옥밀집지역 지정 공고

성북구 성신여대 주변 등 3개소에 대하여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 공고합니다.

2016년 3월 24일
서 울 특 별 시 장

1. 지정대상

연번	명 칭	위 치	면 적(㎡)	한옥비율(%,동) (한옥/전체)	비 고
	계	3개소	59,947	28.68% (111/387)	
1	성신여대 주변	성북구 보문로30라길 21 일대	14,097	51.61% (48/93)	
2	정릉시장 주변	성북구 보국문로11길 28 일대	22,545	18.94% (25/132)	
3	보문동 일대	성북구 보문로13라길 10 일대	23,305	23.46% (38/162)	

2. 지정구역 범위 : 붙임 참조
※ 첨부된 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3. 공고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성북구 도시계획과(2241-2803) 및 서울특별시 한옥조성과(2133-5573)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[따로붙임]

한옥밀집지역 지정구역도